

ICC/ISBP의 실무적용상의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ISBP of ICC

박성철(Sung-chul, Park)

배화여자대학 사이버무역과 조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실무적용상의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
| II. UCP상의 서류심사기준과 ISBP | V. 결론 |
| III. ISBP적용상의 한계점 | 참고문헌 |

Abstract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was approved in Rome in October 2002 and was published in January 2003. ISBP was already stipulated on the article 13(a) of UCP 500 as the basis of examination of documents. But there was no specific contents on what is ISBP. So, by using the ISBP of the ICC, bank practitioners can bring their practices in line with those followed by their colleagues worldwide.

In this Article, the writer will compare with UCP 500 and ISBP and Korea banks' practice an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mong them.

To the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o reestablish the relations between UCP 500 and ISBP. And It is also require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in using the terms calculating the period and using the reserving wordings.

Key Words: ISBP, UC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 서론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서류에 의한 거래¹⁾라고

1) UCP 500 제4조 : In credit operations all parties concerned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and/or other performances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류에 의한 신용장거래가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데는 그에 따른 장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신용장거래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²⁾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신용장거래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수익자에 의한 서류위조문제이다. 즉, 선적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고 정상적인 서류를 제시해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류위조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신용장거래에서 엄격일치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자에 의해서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 은행은 상당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는가를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엄격일치성의 원칙은 일부 완화되어 상당일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개설은행이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용장조건과 일치성여부가 관건이 된다.

서류의 심사는 전 세계적으로 Citibank와 같은 선도은행에 의해서 연속적인 기준(a continuous basis)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³⁾, 종이서류를 스캐닝(scanning)하여 집중적인 처리센터로 송부한 후 컴퓨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심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은행도 있다⁴⁾.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이와 같은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서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의 은행들이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UCP 500 제13조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이하에서 ISBP라고 칭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ISBP인지에 대해서 규정된 바 없었으며, 그 동안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공식의견서 등이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해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무역거래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한편,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108(e)조에서는 “정규적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금융기관들의 표준관습”(standard practice of financial institutions that regularly issue letter of credit)을 서류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통일상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관습은 공식 커멘트⁵⁾는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관습과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발행된 기타관습 및 지방관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⁶⁾. 따라서 미국통일상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관습은 ICC의 ISBP와는 내용상 차이가 있는

2) ICC, DCINSIGHT Vol.9. NO.3, July-September 2003, p.1.

3) James G. Barnes & James E. Byrn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Vol.35. No.1, Spring 2001.

4) 국내 우리은행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5) 이러한 공식 커멘트는 법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6) John F. Dolan, “Letter of Credit: A Comparison of UCP 500 and the New U.S. Article 5,” *J.B.L.*, November 1999, p.523.

것으로 국제거래에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장장의 국제거래에서 서류심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ICC에서는 각 국내위원회의 수집자료와 함께 ICC에서 발표된 의견(opinions), 결정(decisions), 입장서(position papers)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류의 일치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하나의 기준으로서 ISBP를 발표하게 되었다⁷⁾. 따라서 지금까지 각국의 은행들 사이에 해석상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됨으로써 신용장거래의 수월성을 상당히 제고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될 ISBP는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된 사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 국내의 은행관습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며, 해석상의 애매모호함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국내은행관습과 ISBP의 불일치점이 있는지를 실무관행의 조사를 통해서 조명해 보고, 해석상의 애매모호함을 지적함으로써 차기에 UCP 500의 개정이나 ISBP의 개정작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일조함과 더불어 실무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신용장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ICC의 ISBP규정 전문을 분석·검토하고, 국내 은행의 실무관행을 전화 조사 및 업무 담당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며, 서류심사와 관련된 국내의 논문과 문헌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I. UCP상의 서류심사기준과 ISBP

1. ISBP의 제정과정

ICC에서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은 1983년 UCP 500이 발표된 이후에 신용장거래에서 널리 채택되어지는 국제규칙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UCP 500 발표이후 2000년 말까지 600 개 이상의 질의(inquiries)가 ICC 은행위원회에 접수되었다. 이는 여전히 신용장거래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ICC의 은행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0년 5월에 UCP 500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심사기준으로서 국제은행표준관습을 조문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화하고 이러한 관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업부(working party)를 설치하였다. 이 작업부에는 미국의 Donald R. Smith(시티은행)와 덴마크의 Ole Malmqvist(단케스케은행)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0명의 전문위원로 구성되었다.

동 작업부에서는 전세계의 은행실무가들이 이용하는 서류심사목록을 45개 국가로부터 수집하여 검

7) 서정두, "ISBP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08, p.322.

트를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서류의 정정, 환어음, 서류의 서명, 서류상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표시, 정형거래조건표시, 수리적계산, 통합된 서류,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의 10개 연구과제별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였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ICC의 의견서(Opinions), 결정(Decisions), 입장서(Position Paper)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ISBP는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 의하여 14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초안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개조항이 ICC의 공식문서로 채택되고, 각 국에 배포되어 2003년 1월부터 사용되게 되었다⁸⁾.

2. UCP상의 서류심사기준과 ISBP와의 관계

UCP상에 서류심사기준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조항은 제13조 a항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되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면상 일치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UCP 500에는 여러 조항에서 서류심사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제15조에서 서류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전문용어의 해석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서류발행인의 불명확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의 발행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신용장개설일 이전 일자의 서류의 수리여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23조부터 제29에서는 개별의 운송서류별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는 운송주선인 발행 운송서류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는 운송서류상의 갑판적, 부지약관, 송화인의 명의에 대한 표시규정을 하고 있다. 제32조에서는 무사고 운송서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운송서류상에 운임지급관련 표시규정을 하고 있다. 제34조부터 제36조에서는 보험서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는 상업송장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에서는 기타서류에 대한 수리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UCP 500의 제20조부터 제38조 사이에는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의 일반적인 수리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ISBP에서는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해상/해양선하증권, 용선계약부선하증권, 복합운송서류,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의 5가지)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의 5가지 서류에 대해서 수리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UCP에서 다소 부족하게 다루어진 환어음에 대해서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함으로써 무역거래자와 은행사이의 이해관계를 상당부분까지 명확하게 조정하고

8) Donald R. Smith, DCINSIGHT, Vol.8, No.4, ICC Oct.-Dec. 2002, p.23.

9) UCP 500 제13조 a항 : 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stipulated in the Credit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Compliance of the stipulated documents on their fa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UCP와 ISBP와의 관계에 대해서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ISBP는 UCP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¹⁰⁾ 그러나 향후 UCP의 개정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¹¹⁾ 신용장상에 별도로 삽입하지 않고도 UCP가 적용되는 경우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¹²⁾

그런데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ISBP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경우에 따라서 해석상에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에 어느 규정이 우선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현실적으로 UCP 500은 개정된 이후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실무관습과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실무관습을 정리한 ISBP와 마찰이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최근의 실무관습을 정리하여 발표한 ISBP가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ICC에서는 2개의 규칙¹³⁾간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ISBP는 UCP 500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¹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UCP 500이 기본규정으로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서류에 대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2개의 규칙 중 하나는 10년 전에 개정된 규칙이며, 하나는 현행의 관습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규칙¹⁵⁾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규칙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법기술을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칙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제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입법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 규정된 ISBP에서는 UCP 500의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C의 의도대로라면 이러한 부분은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⁶⁾. 실행규정으로 운용

10)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 No.645, 2003, p.8.

11) *ibid.*, p.9.

12) ICC의 이러한 규정은 물리적으로 UCP를 ISBP에 우선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인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다. 실무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ISBP의 내용이 보다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UCP 600의 개정에서 ISBP의 내용을 어떻게 수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2개를 양립해서 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UCP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ISBP는 세부적인 구체적인 서류심사기준을 규정해서 "ISBP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 UCP에 따른다"로 규정하여 UCP와 ISBP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규정방법은 해상보험에서 약관(ICC)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MIA에 따르면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UCP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채택되어 오고 있지만 ISBP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13) ISBP를 "규칙"이라고 명명하는데 동의한다.;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600의 주요과제"; 한국무역상무학회 발표논문, 2003.12. p.39; UCP나 ISBP는 모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관습·관행(practice)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레벨로 보아 규칙이라고 통일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ISBP를 "기준"으로 명명하더라도 실무상의 효용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만약에 ISBP를 "실무지침서" "설명서"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UCP보다는 훨씬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은행실무가들이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SBP로 인하여 신용장거래의 수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 ICC의 제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서류검사자들이 참조하는 것으로만 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ICC 은행위원회의 Martin Show(ICC DCINSIGHT, Vol.9. No.1, January-March 2003. 1-3월)가 이야기하듯이 ISBP를 무시하는 경우에 무모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면 ISBP와 UCP의 실무적인 기능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ICC, *ISBP*, op.cit., p.8.

15) *ibid.*, p.9; ISBP는 ICC국가위원회와 개인 ICC위원들에 의해서 제공된 현행의 신용장관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UCP의 개정에 중요하게 이용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철저하게 UCP 500의 내용을 배제하고 항목별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면 훨씬 명료한 규정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ICC의 ISBP는 UCP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수리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UCP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원산지증명서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UCP에 한정하여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보다 넓은 의미로 국제은행표준관습(ISBP)을 확대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¹⁷⁾ 따라서 ISBP에 대해서 UCP 500 제13조 a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이라고 하는 문구는 UCP 500상의 규정자체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¹⁸⁾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ISBP 즉, 국제표준은행관습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차기 UCP의 개정시에는 ISBP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CP에 수용할 것인지는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⁹⁾. 또한 ISBP는 규칙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불일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우며, ISBP의 내용이 UCP에 수용되었을 때 보다 확실해진다는 견해도 있다²⁰⁾.

Ⅲ. ISBP적용상의 한계점

ISBP는 그 동안의 ICC에 들어온 질문에 대한 의견서 및 각 국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 ICC의 기존 입장과 달리 규정된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²¹⁾ 즉, “Stale”이라는 용어의 사용문제, 어음기한의 산정과 관련한 “after”의 해석문제 등이다. 그리고 187조에서 규정되어 있던 분할담보에 대한 규정은 이후에 조항의 일부가 삭제²²⁾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ISBP의 실무적용상 또는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UCP 500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²³⁾, 해석상 불일치 가능성이 있는 규정, 우리나라 실무관행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을 발췌하여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6) 여기서 논자가 UCP와 중복된 내용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ISBP가 200개 조항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가들에게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2개의 규칙이 불필요하게(redundant)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17) Paul Turner,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Vol.8. No.4, *ICC DCINSIGHT*, 2002, pp.12-13.

18) John F. Dolan, *op.cit.*, p.524.

19) ICC, *DCINSIGHT*, Vol.9, No.4, October-December, 2003, p.2.

20) Lee T. O., “The UCP 500 Transport Articles need to be revised,” *ICC, DCINSIGHT*, Vol.9, No.4, October-December, p.5.

21) 서정두, *전계논문*, pp.335-336.

22) ICC, *DCINSIGHT*, Vol.9, No.3, July-September, 2003, p.17; *Corrigenda*에 의해서 삭제 됨.

23) ISBP, *ICC Pub.No. 648*, p.8에서 강조를 위해서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논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실행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ISBP에서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UCP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이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BP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UCP의 내용만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근거가 미약하다.

1. UCP 500과 중복 규정되어 불필요한 내용

1)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규정

ISBP 제1조의 첫 문단²⁴⁾은 독립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UCP 제3조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은 신용장 개설시 개설의뢰인의 주의사항 그리고 수익자의 주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두 번째 문단만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기한산정과 관련한 용어의 해석기준

UCP 500 제47조에서는 선적기간을 산정하는 용어로서 “from”, “till”, “until”, “to”의 경우에 당해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after”의 경우에 당해 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음기한의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한편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ISBP 제18조에서는 “within”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당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적일자 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의 산정에 적용된다. 그러나 ISBP 제45조에서는 어음기한과 관련하여 “from”이 사용된 경우 당해 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역실무관습을 반영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거래관련 문서에서 용어가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from은 선적기한 산정시에는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어음기한의 산정시에는 당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3)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의 발행

ISBP 제56조에서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UCP 제9조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으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4) 송장의 발행인

ISBP 제60조에서는 송장을 발행하는 주체로서 수익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는 UCP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선하증권상의 물품명세

ISBP 제93조와 제114조에서는 해상선하증권 및 용선계약부선하증권상의 물품명세는 일반적인 용어

24) ISBP 제1조 The terms of credit are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s even if a credit expressly refers to that transaction.

(general terms)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²⁵⁾ 이는 UCP 제37조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6) 기본계약의 참조에 관한 규정

ISBP 제5조²⁶⁾의 내용은 서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기초적인 거래, 즉, 개설신청서, 합의된 신용장 개설의 세부사항의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회피하거나 해결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개설단계에 당사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서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의조항이며 사전 고려사항(*preliminary consideration*)으로 평가된다²⁷⁾. 그런데 이 조항을 실무수행 중 서류심사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매매계약서나 개설신청서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잘 못 이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본 ISBP 제5조는 서류심사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신용장개설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류심사시에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ISBP에서는 부적절한 조항으로 평가한다. 즉, UCP 제3조의 독립성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신용장개설 및 통지수령시 당사자들이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UCP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굳이 재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해석상 또는 실무관행상 충돌가능성이 있는 규정

1) FBL의 수리요건에 관한 규정

UCP 제30조²⁸⁾에서는 운송주선인 발행선하증권의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장에 별도로 수권되지 않는 한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는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또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이 서명한 경우나,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의를 명시하고 또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대리인으로 운송주선인에 의해 서명된 경우에 수리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 자격으로 또는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대리인 자격

25) 제137조에서는 복합운송서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6) ISBP 제5조; Many of the problems that arise at the examination stage could be avoided or resolved by careful attention to detail in the underlying transaction, the credit application, and issuance of the credit as discussed.

27) ISBP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전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즉, 서류심사기준이기보다는 신용장거래시에 사전에 검토해야할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다.

28) UCP 500 제30조 : Unless otherwise authorizes in the Credit, banks will only accept a transpor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if it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i. 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ii. the name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SBP 제77조에서는 “forwarder’s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가 신용장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의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운송주선인 자신의 명의로 된 FBL을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이러한 규정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forwarder’s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가 UCP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상에 별도로 수권한 경우’로 해석하면 일용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UCP 제30조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수리요건이라고 볼 때, 비록 신용장상에 “forwarder’s B/L acceptable”이라는 특약문구가 있더라도 제시되는 서류는 운송주선인 발행한 선하증권이므로 UCP 제30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warder’s B/L acceptable”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운송주선인이 서명하고 발행한 FBL을 수리하도록 규정한 ISBP의 조항은 UCP 제30조와 충돌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forwarder’s B/L acceptable”의 문구는 신용장상에 별도로 수권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제시되는 서류는 여전히 UCP에서 언급하는 FBL이기 때문에 UCP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5년 3월 29일자 ICC의 의견에는 “FBL은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및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상선하증권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³⁰⁾.

또한 1985년 4월 23일자 의견³¹⁾에는 FIATA FBL이 수리되기 위해서는 UCP 400의 제26조(UCP 500에서 제30조로 변경했으나 취지 동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상선하증권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³²⁾

기존의 ICC의 의견과는 괴리가 있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은 복합운송서류(Freight Forwarder’s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s acceptable)³³⁾의 경우나 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 is acceptable)³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 원적 유보문언 표시 선하증권의 수리거절에 관한 규정

신용장에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환적(transshipment)은 신용장에 규정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해상운송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⁵⁾. 그런데 이러한 환적은 환적과정에 화물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함으로 별도

29) ISBP 제124조에서는 운송주선인발행 복합운송서류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혼재업자용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도 같은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30) 이대우, 「신용장거래사례연구」, 국제금융연수원, 1997, p.67에서 재인용.

31) ICC documents 470/450

32)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the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4-1986, p.40; ICC Pub No. 459, Case No. 99에서도 FIATA FBL도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아무런 자격이 없이 단지 운송주선인의 자격으로 발행한 경우는 수리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영환·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p.297.

33) ISBP 제124조.

34) ISBP 제148조.

35) UCP 500 제23조 b항.; ICC Pub. No.459, Case No.113.

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도 환적은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UCP 500에 따르면, 화물이 컨테이너 등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도 전 운송이 단일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적금지조건을 위반하면 수리될 수 없다고 규정³⁶⁾하여 환적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환적에 대하여 ISBP 제88조에서는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고, UCP 제23조 d항³⁷⁾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³⁸⁾ 선하증권상에 “환적이 발생할 수도 있다(transhipment may take place)”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불일치(discrepant)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제31조에서는 갑판적에 대해서는 “물품이 갑판적 될 수도 있다(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갑판적이나 환적은 모두 화물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갑판적에 대해서는 유보문언이 들어 있는 선하증권에 대해서 수리하며, 환적에 대해서 유보문언이 들어있는 선하증권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항으로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환적과 갑판적의 실제적인 위험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3) 서류의 원본요건에 관한 규정

UCP 제20조 b항에서는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복사기기, 자동기기, 컴퓨터기기, 카본 복사에 의한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와 서명이 있는 경우에 원본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 c항에서는 신용장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사본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수리한다. 사본에는 서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duplicate, two fold, two copies로 요구하는 경우에 1통의 원본과 나머지는 사본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ISBP 제31조에서는 두통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경우에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first original, second original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시 어떤 것도 원본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본에 이와 같은 표시를 하여 원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ISBP 제75조에서는 선하증권은 원본 선하증권으로 수리되기 위해서 ‘원본’(original)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UCP 제20조 c항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평가된다. 즉, UCP에서는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에 원본표시가 없는 경우에 사본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ISBP에서는 사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무관행에서도 선하증권상에 원본(original)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관행과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36) ICC Pub. No.459, Case No.115.

37) UCP 500 제23조 d항: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banks will accept a bill of lading which : i. indicates the transhipment will take place as long as the relevant cargo is shipped in Container(s), Trailer(s) and/or “LASH” barge(s)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and/or ii. incorporates clauses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38) UCP 제23조 d항은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환적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UCP 제23조 d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환적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ICC Banking Commission의 의견서³⁹⁾에 따르면 원본성의 수기나 타자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원본으로 수리된다("An original document may be an originally handwritten or originally typed document. A document produced in this manner does not need to be marked as original")고 하는 의견이 나와 있다. 이러한 ICC의 견해가 반영되어 ISBP 제75조가 입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은행실무관행과의 마찰가능성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⁴⁰⁾.

또한 UCP 500 제20조 b항에서는 선하증권이 복사기기에 의한 것, 자동화기기에 의한 것, 컴퓨터기기에 의한 것, 탄소복사지에 의한 경우에 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SBP 제75조를 원용하면 선하증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원본"(original)의 표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역설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4) 어음의 만기일 산정에 관한 규정

ISBP 제48조에서는 어음의 만기일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a항에서는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나 또는 불일치하지만 지급은행이 서류의 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수령일(date of receipt) 다음날(after)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SBP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은행은 7영업일 동안 서류심사기한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음의 인수일을 서류수령일 다음날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실무적으로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개설은행은 서류심사기간(7영업일)내에 사소한 불일치에 대해서도 불일치통보를 한 후 나중에 다시 승인하여 어음기한의 연장을 폐할려고 할 수 있는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의 대외신뢰도 관리측면에서 그러한 시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동조 b항에서는 불일치 서류의 경우에는 불일치한 서류에 대해서 서류의 거절을 통보한 후에 다시 승인하는 경우에 후속 승인일 다음날(after)부터 어음기한이 기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¹⁾. 동 조항의 뒷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어음의 인수일자는 서류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서류의 승인일자와 어음의 인수일자는 동일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 같다⁴²⁾.

5) 항대항 선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

ISBP 제73조와 제74조에는 항대항 선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해상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UCP 제23조가 적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CP에는 항대항 선적을

39) ICC Pub.632, R.216, 20002, p.232.

40) 국내은행들은 선하증권상에 Original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면담 및 전화조사)

41) ISBP 제48조 b항.

42) 은행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참조함.

나타내는 운송서류로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불능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이 있다. 그러면 UCP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은 항대항 선적을 커버하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할 수 없는 서류로 배제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6) 포장상태에 대한 유보문언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ISBP 제90조에서는 선하증권상에 “포장은 해상항해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Packaging may not be sufficient for the sea journey)”는 표시는 불일치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³⁾. 그러나 “포장은 해상항해에 충분하지 않다.(Packaging is not be sufficient for the sea journey)”라고 표시되면 불일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품의 품질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물의 포장상태와 관련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무역실무관습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⁴⁴⁾

이와 유사한 규정은 UC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갑판적재와 관련한 표현을 규정하고 있는 UCP 500 제31조의 내용이다. 화물을 갑판적재했다(the goods are loaded on deck)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수리거절하지만 갑판적 될 수도 있다(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는 문구가 들어있는 선하증권은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역실무에서 컨테이너 운송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갑판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유보문언을 선하증권상에 삽입하는 관습을 수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UCP 규정도 실제로는 갑판적이 되었는데도 갑판적인지 선창적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서 선하증권상의 표시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7) 무사고표시요구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ISBP 제 91조에서는 신용장에서 무사고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사고(clean)의 표시는 선하증권상에 별도로 없더라도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lean on board”라고 하는 표시(mark)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92조에서는 선하증권상에 인쇄되어 있는 “clean”이라는 문언이 고의적으로 지워진 경우에도 하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⁵⁾. 그런데 신용장거래실무에서는 UCP 제33조 b항에 따라 운임관련 표시로 선지급 또는 착지급의 표시(mark)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상에 “Freight prepaid” 또는 “Freight collect”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ISBP 제96조와 제117조에서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운임지급과 관련

43) ISBP 제111조 및 제234조에서 용선계약부선하증권과 복합운송서류의 경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44) 국내 은행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파악한 자료임.

45) ICC Pub.459, Case No.122에 나와있는 ICC 사무총장의 견해가 반영된 조항이다.

한 표시는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 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 하에서 “운임선지급”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운임의 선지급을 부인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⁴⁶⁾에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⁴⁷⁾

그런데 동일한 신용장상의 선하증권요건 중에서 운임관련 표시(mark)는 요구되는 경우에 “Freight prepaid”와 같은 별도의 표시를 해야하고, 무사고의 표시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신용장조건상에는 동일한 표시로 된 지시내용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혼란이 야기된다.

예를 들어 신용장상에 선하증권의 요건으로 “Full set of ocean bills of lading to the order of ABC bank, bearing the statements “clean on board” and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clean on board”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freight prepaid”라는 표시는 해야 된다고 해석한다면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신용장의 지시내용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IV. 실무적용상의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1. UCP와 중복규정에 대한 대응방안

UCP의 많은 내용 중 ISBP에서 선택적으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UCP와 중복된 내용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ISBP가 200개 조항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에게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2개의 규칙이 불필요하게(redundant)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삭제하여 ISBP를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

대표적인 중복내용은 ISBP 제1조의 독립성의 원칙관련규정, 제56조의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발행제한 규정, 제60조 송장발행인 관련규정, 제9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증권상의 물품명세표시 관련규정이다.

그리고 어음기한의 산정과 관련한 전치사로서 “from”을 규정하면서 당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UCP 500의 제47조의 선적기한산정시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동일한 용어를 규정하면서 기한의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동일한 거래관련 문서에서 용어가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from은 선적기한 산정시에는

46) 예를 들면, “freight prepaid notation does not mean freight has been paid. It is still due and collectable prior to discharge”와 같은 문구가 들어있는 선하증권이다.

47) ICC Pub. No.489, Case No.248.

당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어음기한의 산정시에는 당해일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UCP의 개정시에는 어느 것으로든지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ISBP 제5조는 서류심사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신용장개설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류심사시에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ISBP에서는 부적절한 조항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신용장개설 및 통지수령시 당사자들이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UCP 제3조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심사기준인 ISBP에서 재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 해석상 또는 실무관행상 충돌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1) FBL의 수리요건에 대한 대응방안

UCP 500 제30조의 FBL수리요건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SBP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forwarder’s B/L acceptable”이라는 특약으로는 해석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특약으로 규정하면 주선인 자신만의 명의로 서명 발행된 FBL을 수리하도록 할 수 있을까? “FBL without identification of carrier is acceptable”로 하면 될 것이다.

2) 유보문언표시에 대한 대응방안

현재 UCP 500과 ISBP에 따르면 유보문언의 표시에 대한 규정이 3가지가 있다. 유보문언은 확실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용장거래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갑판적유보”(수리가능), “환적유보”(수리불능)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는 “포장상태유보”(수리가능)와 관련하여 통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갑판적재와 관련한 유보문언 표시관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보자. 먼저, 갑판적재와 관련한 표현을 규정하고 있는 UCP 500 제31조의 내용이다. 화물을 갑판적재 했다(the goods are loaded on deck)는 명시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수리거절하지만 갑판적 될 수도 있다(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는 문구가 들어있는 선하증권은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역실무에서 컨테이너 운송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갑판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유보문언을 선하증권상에 삽입하는 관습을 수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UCP 규정도 실제로는 갑판적이 되었는데도 갑판적인지 선창적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서 선하증권상의 표시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UCP규정을 컨테이너 운송

인 경우에 갑판적재 표시된 선하증권도 수리하도록 규정을 현실화하고, 선사는 선하증권상에 갑판적재 컨테이너와 선창적재 컨테이너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하증권상의 표시사항과 실제 선적사항을 일치시키도록 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ISBP에서 포장상태와 관련하여 유보문언이 들어있는 경우에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이러한 문언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해진다.

3) 서류의 원본요건에 대한 대응방안

UCP 500 제20조 b항에서는 선하증권이 복사기기에 의한 것, 자동화기기에 의한 것, 컴퓨터기기에 의한 것, 탄소복사지에 의한 경우에 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SBP 제75조를 인용하면 선하증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원본”(original)의 표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역설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선하증권이 컴퓨터기에 의해서 발행되는 것이 현행 실무관습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차기 UCP개정시 선하증권인 경우에 특별히 원본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든지⁴⁸⁾ 아니면 ISBP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어음의 만기일 산정과 관련한 대응방안

어음의 만기일 산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서류거절 통보를 한 후에 다시 승인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ISBP 제48조 b항 뒷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어음의 인수일자는 서류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서류의 승인일자와 어음의 인수일자는 동일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즉, 후속적으로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일이 곧 어음의 인수일이 된다고 하면 된다. ISBP 제48조 b항 제일 마지막 문단인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draft must be no later than the date of approval of the documents는 The date of acceptance of the draft must be same date of approval of the documents로 하는 것이 보다 의미상 명확해진다.

5) 항대항 선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에 대한 대응방안

ISBP 제74조에서 항대항 선적을 나타내는 경우에 UCP 제23가 적용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대항 선적을 나타내는 경우로 UCP 제24조의 해상화물운송장도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해상 또는 항대항 선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UCP 제23조 또는 제24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48) ICC의 Opinion에는 수작업으로 작성된 경우, 타이핑으로 작성된 문서는 원본표시를 하지 않아도 원본으로 수리된다고 나와있다.

6) 무사고표시 선하증권 관련 대응방안

동일한 신용장하에서 선하증권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 중 “무사고선적”(clean on board)의 표시는 요구하는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운임선지급”(freight prepaid)의 표시는 요구하면 해야한다면 실무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ISBP가 신용장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더 복잡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특별히 표시(mark)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별도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통일시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 대한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수월성이 제고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최근에 발표한 ICC의 ISBP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용장거래 관련 실무관행을 새롭게 정착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와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CC의 ISBP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UCP와 ISBP와의 명확한 관계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ISBP는 UCP의 보완서로서 UCP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설명⁴⁹⁾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두 개의 규칙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상호간에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복된 내용은 UCP나 ISBP 중 한 군데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UCP의 개정작업⁵⁰⁾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UCP와 ISBP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근본취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 기한산정과 관련한 전치사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의 제시, 그리고 유보문언 표시서류의 수리여부에 대한 일관성 확보 등이다.

49) ICC, *ISBP*, op.cit., foreword.

50) UCP 500은 개정작업을 위하여 2003년 12월 10-11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첫 은행위원회를 개최예정이었으며, 실제로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ICC, *DCINSIGHT*, Vol.9. No.4, October-December 2003, p.2.

참고문헌

- 서정두, "ISBP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 양영환, 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 이대우, 「신용장거래사례연구」, 국제금융연수원, 1997.
- Barnes, James G., & James E. Byrn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Vol.35. No.1, Spring 2001.
- Dolan, John F., "Letter of Credit: A Comparison of UCP 500 and the New U.S. Article 5," *J.B.L*, November, 1999.
- ICC, *DCINSIGHT*, Vol.9. No.3, July-September 2003.
- ICC, *UCP 500*, Pub. No.500, 1993.
-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ICC Pub. No.632, 2002.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CC Pub.No.645, 2003.
- ICC,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the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84-1986," Pub. No.434, 1987.
- Lee, T. O., "The UCP 500 Transport Articles need to be revised," *DCINSIGHT*, Vol.9. No.4, ICC, October-December 2003.
- Turner, Pau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DCINSIGHT*, Vol.9. No.4, ICC, October-December 2003.